

# 專門性伸張의 戰略

—看護專門職에 대한 示唆—

김 란 수

(연대 교육과학 대학장)

## 專門職의 特徵

專門職에 대한 論議는 1915년에 Flexner, A.가 社會事業從事者는 專門職인가? (Is Social worker a profession?)라는 問題提起에서 비롯하여 1969년 W.J. Goode의 “專門化의 理論的限界(The theoretical limits of professionalization)” 檢討 등 주로 社會學者들의 關心을 거듭해서 날리 일 으켜온 主題의 하나이다. 社會의 機能이 分化되고 勞動의 分業化가 促進됨에 따라서 허다히 많은 職種이 開發되고 있다. 그리고 知識의 爆發的 增加 世紀에 들어서면서 科學과 技術의 長期的 發展趨勢와 더불어 職業에 대한 教育要件은 上昇(educational upgrading)되는 強化되고 있으나 反面에 學歷要件은 職業上下降(occupation downgrading)現象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販賣職은 高等教育卒業者가 차지하는 比率이 낮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大卒者들이 主宗을 이루는 職業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日本의 경우 1960年代에는 약 6%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年代에는 倍加해서 약 11% 線으로 上昇하고 있다.<sup>1)</sup> 職業要件의 學歷上昇과 學歷의 職業的 下降의 例는 이밖에도 많다. 따라서 職

業의 特典位階(prestige hierarchy)上으로 昇階 過程上으로는 專門職 地位를 받아야 하나 實地는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職業從事者의 不滿이 랄까 挫折意識은 그만큼 深化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經濟變動과 職業構造의 變化를 端的으로 例示하는 위의 例는 美國의 경우 한층 더 두드 러진다. 知識産業(knowledge industry)이 續産 됨에 따라서 知識이 敎養人이 專有하는 裝飾的 價値를 넘어서서 生産性을 드높이는 機能的 價値를 發揮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Drucker, P.F의 10餘年前 推定으로는 知識産業이 1955년에 GNP의 1%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1900년에 비하면 그간에 3倍增加를 보인 것이다. 1965년에는 GNP의 10%, 그리고 1970年代에는 15%를 차지할 정도로 知識産業의 比重增大는 加速化되고 있다. 이것을 職種의 變遷으로 살펴보면, 1900年代에는 最大單一職種이 農業從事者이었던 것이 1940年代에는 半熟練工, 實에 있어서는 未熟練의 濼被勞動者群으로 바뀌었다. 다시 1960年代에는 이미 專門職, 管理職 그리고 技術職種에 종사하는 이른바 知識勤勞者(knowledge worker) 들로 탈바꿈하고 1980年代에는 이들이 勞動市場의 大衆을 이루는 職種이 되는 것으로 展望하였다.<sup>2)</sup>

본 글은 연대간호대학이 10월 24일~25일 양일간 “전문성 신장의 전략 —간호전문직에 대한 시사—”를 주제로 주최한 학술대회의 내용임.

1) 湖木守一, “經濟變動と教育” 大橋 外編 現代教育の診斷(東京大學出版會, 1975), p. 155.

2) Peter F. Drucker *the Age of Delcontinuity*(Harper and Row, 1969, p. 264.

3) *Ibid*, p. 277.

그러나 專門職이라고 俗稱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에게 挫折感은 도사리기 마련이다. 傳統的으로 精髓專門職(elite profession)인 醫學, 法學, 神學 專攻자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特典이 社會적으로 賦與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高學歷의 젊은 知識勤勞者들이 自身을 專門職人(professional)으로 보고 있지만 社會의 現實은 그들이 한낱 지난날의 熟練技能人の 地位를 格別 높은 報酬로 繼承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要컨대, 産業經濟構造가 革命的 變化를 이룩하고 職業의 學歷要件이 強化되고 高等教育이 大衆化趨勢를 擴張시킴에 따라서 高等教育 특히 四年制學部課程은 마치고 들어서는 職業이던 專門職으로 看做하는 것은 素朴한 學歷基準이 되고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임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Rozella M. Schlotfeldt도 이와 脈을 같이하는 主張을 “看護의 未來”(Nursing in the Future) 展望에서 지적하고 있다. 즉 1965년 ANA가 建議한, 看護의 專門의 研究(professional study)는 學士學位가 最大要件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現時代에 맞지 않는 것이다. 學士學位水準의 專門教育을 制度化할 時點에 들어섰다. 專門學門에 대한 豫備要件(prerequisites)에 결들여서 3~4년의 學部人文教育(liberal education)을 專門大學院(professional school)의 入學最大要件으로 하여야만 할 것이다.<sup>4)</sup>

위의 Drucker의 知識産業化展望은 韓國社會의 2000년대에도 適中할 것이다. 예컨대, 金泳謨는 “機能論的 觀點에서는 2000년대의 이상적인 韓國社會發展을 技術官僚가 지배하는 知識産業社會라 간주할 것이고, 新葛藤論的 觀點에서는 화이트 칼라가 지배하는 中産層社會라 간주할 것이다. ……知識産業社會, 中産層社會 및 福

祉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政策과 方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5)</sup>

現代社會의 發展趨勢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職業(occupation)들이 專門職(profession)化 되어 가고 있고 專門化를 志向하고 있다.<sup>6)</sup> 韓國社會도 先進祖國創造의 旗幟를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高等教育을 받고 就業한 사람들의 專門職人으로서의 役割期待 또는 抱負는 擴張一路를 밟을 것이고 또 持續的으로 強化될 것이 展望된다.

그러면 과연 專門職業은 一般의인 職業과 어떤 點에서 다른 것인가? 에 대한 答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論者에 따라서 基準은 多樣하고 또 強調點에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多元化된 社會에서 職業構造도 複雜化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合意(consensus)形態은 이더운 것이 事實이고 또 完全合意를 求하려는 것도 무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로 대체로 다음 다섯가지로 特徵지을 수 있는 것 같다. 즉

첫째로, 職務의 遂行이 體制的理論에 基礎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職務상의 顧客(client)에 대해서 職務遂行者의 權威가 認定되고 있다는 것.

셋째로 그 權威가 公共적으로 하나의 資格으로 認定되고 있다는 것(免許制度)

네째로, 職務遂行에 대한 倫理規定이 세워져 있다는 것

다섯째로, 專門의 風土(professional culture)를 守護하고 實行하기 위한 閉鎖的인 組織體를 가지고 있다는 것<sup>7)</sup>

위의 다섯가지 特徵들을 專門職業이 되는 條件들로 볼때 첫째와 둘째는 內在的이고 必須的인 것으로 看做할 수 있겠고, 나머지 셋은 專門職으로서 認定하는 外部的인 必要條件들로 편의상의 구분을 할수도 있다.

看護職은 위의 조건들을 일마나 充足시키고

4) R.M. Schlotfeldt, "Nursing in the Future" N.L. Chaska(ed). The Nursing Profession (McGraw-Hill, 1983), p. 300.

5) 金泳謨, “社會·文化發展”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대의 社會發展과 教育(教育科學社, 1983), p. 92.

6) John A. Jackson, *Professions and Profession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1970), p. 8.

7) E. Greenwood, "The Elements of Professionalization" in Vollmer, H.M. and Millis, P.L. (ed) *Professionalization* 1966, pp. 9~19.

있느냐에 대한 自己省察을 하고 專門性의 伸張을 위해서 어떠한 戰略을 創案하고 實踐하여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論議를 展開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회합의 目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局外者로서 筆者가 關與하고 있는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批判을 試圖하여서 比較的인 眼目으로 그 示唆點을 模索하여 보시기를 勸하는 點이 있을 뿐인 것 같다.

敎職에 대해서는 1966年 國際勞動機構(ILO)와 UNESCO의 “敎員의 地位에 關한 勸告” 속에서 “敎育의 인은 專門職으로 보아야 한다. 敎職은 엄격하고 繼續的인 研究를 거처서 獲得되고 維持되는 專門的 知識 및 特別한 技術을 敎師에게 要求하는 公共的 업무의 一種이다. 또 책임을 맡은 學生의 敎育 및 福祉에 對해서 個人的 및 共同的 責任을 負하는 직업이다”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敎職의 專門性은 敎職者의 主張과 強한 社會的 要請과는 距離가 있다는 것이 냉眼한 現實이다. T. Leggart는 敎職의 專門性에 대한 論議에서 看護職과 敎職이 가장 比較可能한 類似性이 있음을 例示하고 있다. 우선 敎員과 마찬가지로 看護員도 知識을 創造하기 보다는 轉用하고 있고, 맡겨진(captive) 對象에게 職務 遂行을 한다는 點이 같다는 것이다. 病室과 敎室의 狀況이 다른 專門職遂行場만큼 好適하지도 못하고, 奉仕對象이 專門職人으로 禮遇를 하지도 않는다는 點등을 列擧하고 있다.<sup>8)</sup> 그리고 職業集團으로서의 顯著한 特徵이 從業者의 規模가 매우 크고 女性比率이 매우 높으며, 集團的 自律性이 薄弱하다는 點등을 들고 있다.<sup>9)</sup>

從業者數의 規模가 크다보니 稀小價値를 상실하여 各種 特典賦與가 強化된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그의 見解이다.

女性從業者比率이 높다는 것은 몇가지 不利點을 갖게 마련이다. 另尊女卑의 古루한 傳統的 價値觀은 論外로 한다손치더라도 女性에 대한

(表 1) 英·美의 專門職比率

	英	美
Medical practitioners	3.0	3.1
Lawyers	1.8	2.9
Accountants	6.3	6.5
Social welfare workers	2.6	1.8
Nurses	20.0	?
School teachers	27.9	20.8(%)

(表 2) 英·美의 專門職女性占有比率<sup>10)</sup>

	英	美
Medicine	18	7
Law	5	4
Accountancy	14	17
Social welfare work	52	57
Nursing	94	?
School teaching	58	73

複合的 役割期待 때문에 職務献身度(career commitment)가 취약해지는 傾向이 문제가 된다. 子女養育과 家事管理의 莫重한 負擔을 가지고는 自己職務의 專門性伸張努力은 兩立되기가 어렵다. 長期勤續도 어렵지만 代替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知識의 專門的 深化와 技術의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敎職과 看護職遂行의 專門的 水準은 停滯되거나 下落된 實際적 水準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敎職이나 看護職은 二重의 性格特徵을 지니게 되고 있다. 敎員이 過密敎室 속에서 過重負擔을 겪듯이 看護員도 過密病室 속에서 看護負擔過重에 시달린다 그리고도 各種 處遇는 高學歷에 符合되지 않는다. 白衣의 天使라는 聖職者에 準하는 名目的 눈임이 있으나 社會·經濟的 地位는 낮다. 敎員도 聖童에게는 神과 같은 聖職者 이미지 가 있으나 敎師는 아직까지 清貧을 甘受하는 敎育者의 美名 아래 自己의 生存에 必要한 最低限의 物質的 要求조차도 입에

8) T. Leggard, "Teaching as a profession" in Jackson J.A. (ed) *Professions and Profession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1970), p. 176.

9) *Ibid.*, p. 162.

10) *Ibid.*, p. 163.

올리기가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教育에 대한 意慾과 情熱은 사라지고 被勞와 怠慢과 迎合이 敎師의 生活를 支配했다. 敎師는 自身의 生活權을 지키고, 生活와 活動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얻어내는 것을 自身의 權利와 義務로 한다는<sup>11)</sup> 主張이 經濟先進國인 日本에서조차 나오게끔 되었다. 그후 “人材確保法”의 導入으로 敎職者의 處遇改善에 대한 測期的 措置로 狀況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敎職의 專門職的 地位確保는 問題가 아직도 남겨져 있는 課題라고 할 수 있다.

### 專門性 伸張의 戰略

專門職으로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는 職務의 遂行에 있어서도 專門性을 深化시키는 課題는 끊임이 없다. 따라서 初中等教育의 敎師職과 같이 專門性의 確立이 뒤늦은 職務에서는 허다한 問題가 있기 마련이다. 看護職도 例外일 수가 없을 것 같다.

前記한 專門性의 特徵에 비추어 보면 專門性 伸張에는 크게 두가지 變因을 想定해 볼 수 있다. 첫째로 態度變因들로서 從事者의 召命意識을 強化하거나 同僚들의 自律的 統制策을 效率化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둘째로 構造的인 變因들로서 教育體制, 專門職組織의 整備強化 그리고 倫理綱領의 確立과 遵守등을 列擧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전의상의 區分일 뿐 이 모두가 總體的으로 補強될 때 專門性 伸張을 期할 수 있다.

좀더 치밀하게 專門性의 要素들을 考察할 때는 상당히 細分된 目錄들을 想定해 보게도 된다. 예컨대, G. Harries-Jenkins의 경우는 21개의 下位要素들을 考察해 보고도 있다. 즉

表 3. 專門性의 諸要素<sup>12)</sup>

#### 1. 構造的 要素

- (a) 特殊化 : 集團活動의 獨占化
- (b) 集團化 : 權威—認可制의 模範化

- (c) 標準化 : 非職業的 行動의 統制化
- 2. 組織的 要素
  - (a) 空間—時間的 側面
  - (b) 職業集團의 規模
  - (c) 職業集團의 資源
  - (d) 集團關係樣相
- 3. 活動要素
  - (a) 職業集團의 目標
  - (b) 個別成員의 役割
- 4. 教育的 要素
  - (a) 職業의 知能要件
  - (b) 體系的 理論의 基礎
  - (c) 制度化된 教育的 過程
  - (d) 訓練期間
  - (e) 訓練費用
- 5. 理念的 要素
  - (a) 人格의 要件
  - (b) 集團의 一體感
  - (c) 集團의 文化
  - (d) 地位
  - (e) 社會化過程
- 6. 行動的 要素
  - (a) 行爲綱領
  - (b) 業績의 評價

위의 專門性 要素目錄은 網羅的 性格을 띠는 것으로 專門性 伸張에 대한 戰略(strategy)을 考察할 때 考察의 幅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例示한데 지나지 않는다. 本會議의 主題에 관한 發題者로서는 일단 提示할 필요를 느껴서 引用했을 따름이고 더 깊은 考證을 할 수는 없다. 可用資源(人的, 物的)의 範圍內에서 現實的 制約을 받아가면서 敎職이든 看護職이든간에 專門性을 伸張시킬 수 있는 重點事業의 優先順位決定(priority setting)이 戰略家 또는 集團에게 要請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筆者의 關心領域인 敎職에서 보려는 體系的

11) 大稿 三 “職業としての敎師” 河野重男外(編), 現代學社の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76), p. 111.

12) G. Harries-Jenkins, “Professions in Organizations” Jackson, J.A.(ed) *Professions and Professionalization*(Cambridge Univ. Press, 1970), pp. 58~59.

理論의 基礎가 취약하고 실증성이 貧乏한 것이 敎職의 專門性基盤을 確立시키지 못한 原泉의 要因으로 되는 것이다. 韓國뿐 아니라 日本의 경우도 같은 경향이어서 新掘道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13)</sup>

“學校段階가 낮은 경우 아니 높은 경우는 進學士術가 擴大됨에 따라서 敎育內容도 低級하고 또는 分化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敎師는 專門職이라고 하면서도 他專門職과는 다른 科學을 基礎로 하여야만 하는데, 이른바 敎職科學이라든가 敎科敎育學이라고 하는 科學이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의 대다수는 아직도 科學으로서의 完備한 市民權을 얻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敎員養成制度로서도 適切深刻한 것이지만 敎師自身에게도 專門職으로서의 自身을 잃게 하는 것이 된다.”

熟練技能人(craftsmen)과 專門人(professionals)의 判別基準은 바로 職務遂行이 確固하고도 높은 理論의 基礎有無라고 할 수 있다. 固有의 基礎理論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질픈 應用 또는 臨機應變式 雜多한 理論의 援用을 學界의 常識으로는 專門科學으로 認定하지 않는다. 專門職의 權威는 常識總을 넘는 일종의 놀라움과 感服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따라서 一般人에게 非代簪의인 價値가 賦與될 때 確固해진다. 그런데 初中等敎職에서는 그런 特徵이 弱하다.

專門職으로서의 看護遂行의 理論的 基盤階級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理論開發을 最優先課題로 보는 見解(Retionale for theory development highest priority)를 피력한 Callista Roy의 主張은 敎職에도 많은 示唆를 주고 있다.<sup>14)</sup> 그리고 基本脈絡에 있어서 敎職과 看護職間에 많은 類似點을 보게 된다.

그리고 Roy의 看護理論開發의 戰略的 單位

(strategic unit)로서 看護理論構 築團(Nursing Theory Think Tank group)의 發想은 卓見으로 볼 수 있고 看護科學者(Nursing Scientists)에 대한 繼續的 公共支援強化主張도 共感을 불러 일으킨다. 大學院 프로그램에 力點을 들 것을 強調하고 있는 점도 敎職의 專門性 伸張을 위해서 敎育專門大學院의 擴充에 同調해 온 筆者의 經驗背景에서 많은 首肯을 하게 된다. Westwick에 의하면 미국의 간호직 종사자들의 지난 15년간 學士 및 修了證 소지자는 比率이 下降勢를 보이는 反面에 學士 및 碩士學位 소지자가 꾸준히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sup>15)</sup> 學位水準構成比率에 있어서 韓國은 차이가 나겠지만 進展趨勢는 類似性을 띠는 것으로 展望된다.

그런데 問題는 學問研修期間의 延長 또는 上級化가 質的인 統制내지는 向上策이 없을 때 學歷인플레이션現象이 야기될 潜在的 危險을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

學位課程의 績成과 運營이 內實을 欺하지 못하고 學位論文審査의 嚴正性이 결여될 때 學位濫發은 必至의 現象化될 것이고 大學院 分野에 따라서는 韓國의 현실이기도 하다. 필자는 '78년에 “大學과 大衆”(Higher Education and the masses)를 主題로한 서독학술지원재단과 등남아고등교육연구소(RIHED)의 공동주관회의에서 “韓國大學의 學事改革”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때 논평자의 한 분인 서독의 Hans Wapner교수가 “한국대학원에서는 隣接大學 敎授들간에 박사학위를 교환수여하는 병폐가 있고, 동과대학의 교수, 대학생 비율이 1:90인데 과연 質的 統制가 될 것인가? 라는 매우 批判的 論評에 奇蹟 答辯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아세아 13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한국대학교육과 最高學位의 公信用危機를 發端당한 事蹟이었다.

18세기 초반에 英國의 古典主義詩人으로서 名聲이 드높았던 Alexander Pope(1688~1744)는 미

13) 六嬌等, 上揭論文, p.119 再引用

14) Sister Callista Roy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in Chaska. N.L. (ed) *Opitt* pp.453~467.

15) Carmen R. Westwick, New Directions for Nursing Educ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Yonsei University Medical Sciences*. May 1985. p.94.

국대학의 박사학위 수여 실제 대하여 매우 冷笑的인 評을 한 바가 있다. 즉 “미국의 Ph. D.는 미국 고등교육계의 영광이자, 웃은겨리요, 수수께기이다.”라는 혹평을 한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미국대학원교육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제정신차리기(A Soul Searching Study)가 꾸준히 進展되어 200년이 지난 現時點에서 미국의 Ph. D.는 國際的 公信力이 높은 것으로 質的統制가 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大學院에 대한 評價研究를 세차체에 걸쳐 팀으로서 연구한 경험에 비추어 하나의 절충책으로 박사과정의 綜合試驗을 二元化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다. 全國規模로 業績이 認定되고 또 志願하는 學술가 主管하는 시험(national examination)과 중견대로 각 대학원마다의 시험(institutional exam)을 당분간 併合시키는 일이다. 그 目的은 첫째로, 博士學位論文作成을 위한 研究는 獨創性(originality and creativity)를 前提하여야 하기 때문에 公信力이 높은 學會主官試驗合格者에게는 學費免除, 生活費部分補助 그리고 研究費 支援을 優先支給하는 基準로 策定하자는 것이다. 全日制로 研究에 專念(full time devoted study)하는 博士候補生과 指導教授가 各 學問의 新境地를 開拓하도록 되어야만 우리가, 學術의 殖民地的 狀況(academic colonialism)을 하루속히 脫皮해서 先進祖國創造의 旗手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와 希望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提議에 대한 認識이 높아지고 公共支援을 위한 政策的 配慮가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學問, 예컨대, 看護學에의 直時的 適用은 實現可能性이 없다. 그러나 模擬的 適用可能性이 없는 것도 아니다.

現實的 適用可能性을 基準로 하면 大學院間 協同은 學界指導者와 學事行政家의 熱意에 恣意지만 發動되던 체계 이루어질 수 있다. 大學院教育 및 研究指導 프로그램의 編成과 運營에

있어서 協同體制(consortium system)는 출발아 새가지 利點이 있다.

첫째로 費用의 節減까지는 效率를 提高시킬 수 있다. Allan Carter의 推定으로서는 初級大學을 1로 볼때 博士은 1 $\frac{1}{2}$ , 碩士는 2 $\frac{1}{2}$ , 그리고 博士課程은 3 $\frac{1}{2}$ 의 比率로 보고 있다. 大學院教育費가 相對的으로 高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大學院生들의 納入金이 大學院教育에 직접 再投入되기 보다는 大學(校) 全體의 脆弱한 財政에 轉用되어 大學院教育의 強化는 고사하고 改善試圖가 挫折되기가 일수이다. 協同講堂開設의 共同受講制는 經營의 效率(cost-benefit)을 極大化시킬 수 있다.

하나의 例로 새로운 學術研究의 情報을 얻으려면 學術誌(journal)는 必須的이다. 좀 해묵은 資料이지만 일본 大學들의 경우 평균 420종목, 미국의 대학들이 평균 720종목의 定期刊行物(periodicals)를 購讀하는데 比해서 서울대학교조차 약 200종목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學術振興을 생각할 때 致命的인 約點이다.<sup>17)</sup> 學術誌의 備置量이 많은 美國大學들이지만 中部地域大學協業機構는 약 2000개의 學術誌를 共同購入하여 活用하는 體制(a periodical bank)를 構築해 놓고 있다. 그 까닭은 學術誌중 10% 내지 20%는 많이 활용되지만 나머지 多大數는 사용빈도가 매우 낮으며 稀少하게 사용되는 高價의 學術誌를 모든 大學들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므로 稀有誌는 近接大學院이 分擔購入을 하는 일은 손쉬운 協同策이다.

둘째로 敎育效率의 提高를 들 수 있다. 大學院講堂은 專攻深化를 期하여야 하는데 看護專門家뿐 아니라 모든 學問分野에서 細分專攻學者는 稀少하다. 따라서 上級科目(advanced course)는 開設을 못하거나 隔學期로 開設해도 受講生數가 매우 적어서 不實하게 講堂運營이 되기 일수이다. 特殊性을 살려서 共同授業(team teaching)을

16) E. オルターズ編, 木田宏監譯 *そかからの 大學院*(東京大學出版會, 1969), p. 49 行引用.

17) 서울대학교 대학원편, *大學院教育의 強化策研究*, 1971, p. 67.

18) James A. Perkins, *Higher Education: from Antonomy to System*(New York: ICED, 1972), pp. 80~83.

하는 것도 필요하거나와 開放體制로 共同受講이 되면 適正數의 院生確保로 授業을 活性化시킬 수 있다.

세째로, 教育費節減과 教育效率提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大學社會의 學問研修風土(academic climate)를 開放體制로 탈바꿈시키는데서 오는 효과이다. 知識社會學的 觀點에서 보면 學問(科學)은 知識의 體制이거나 確究方法 및 技術의 틀 짜임판이 아니다. 그러한 知識과 技術을 探究하기 위해서 組織된 社會的 活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共同的 學問的 規範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學問社會成員間的 相互關係지음이 學問發展의 기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合理性의 追究가 學問의 目標이지만 研究者가 屬해 있는 學問세계의 風土가 學風의 振作뿐 아니라 其學問 연구의 方向과 性格을 規定짓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學派形成論의 뒷받침이 되는 보이지 않는 大學(invisible college)論이다.<sup>19)</sup> 學問의 健全한 發展과 理論의 刷新을 위해서는 各々が 自律的으로 學問的 組織社會에 參與해서 觀點을 넓히고 創意的 探索의 深度를 더해나가야 할 것이다. 閉鎖的 風土 속에서 學問的 同種繁殖(academic inbreeding) 현상이 생기고 고질화되면 學問發展은 不健全해지고 多岐적 傾向은 學問成長에 阻害要因으로 눈감할 수밖에 없다. Sister Callista Roy가 看護學의 內的分화와 外的連繫樹立이 看護理論開發에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은 이점에서 正鵠을 찌른 觀點이다.<sup>20)</sup>

改革의 戰略은 크게 셋으로 볼 수 있다. 啓導·規制·規範의 接近法이다. 啓導的 戰略(rational-empirical strategies)은 研究協議를 周期的으로

갖고 成員의 相互覺悟를 힘쓰는 일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論과 行함은 一致하기가 어렵고 時日이 걸린다. 規制的 戰略(power-coercive strategies)은 規制力을 가진 學술나 協會가 方針으로 굳히고 強力히 推進하는 방도이다. 制度化로서 公權力作用을 하는 것은 一時的 效率은 있으나 着根定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規範的 戰略(normative-re-educative strategies)으로 指導者와 從事者의 價値規範이 確信으로 內面化될 때 實効가 있고 恒久性을 갖게 된다. 그래서 專門性深化(professionalization)에 論議에서 專門的 社會化(professional socialization)가 강조된다. 이모두의 綜合的 戰略이 適用되어야 할은 물론이다.

### 맺는 말

어떤 職業이든 專門性伸張에 대한 戰略論은 標榜口號로써 사람의 마음을 魅了시키기 쉬우나 眞正 거창하고 그럴듯한 戰略(grand strategies)을 세우기란 어려운 일이다. 筆者의 관심인 敎職에 대해서도 특별한 構想밖에 없는데 未知의 世界인 看護專門職에 대해서 特出한 構想이 나온 까닭이 없다. 學問發展을 위한 礎石을 같이 가는 同僚로서 門外漢의 拙見에 惠諒이 있으시길 바라고 發題를 受給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서 窮與之策을 提示한 것이 앞으로의 論議에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남는다. 理論開發의 側面만 다룬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또 時間的 制限도 있지만 筆者의 力量限界意識에 있음을 끝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19) Diana Crane, *Invisible College: Diffusion of Knowledge in Scientific Commun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 78.

20) C. Roy, *op. cit* p. 453.